

군산시 규칙 제635호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6월 15일

군산시장

본 통 선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무회계” 를 “회계관리” 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 를 “이” 로, “공무원을” 을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 및 거목을 각각 나목부터 하목까지, 거목 및 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가. 회 계 책 임 관 --- 자치행정국장

제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의 2” 를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 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45조” 를 “지방재정법 제45조” 로 한다.

제16조 중 “또는” 을 “및” 으로, “법 제50조제1항” 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월별징수계획서,” 를 “월별징수계획서 및” 으로, “집행계획서·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 를 “집행·지출계획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장애계” 를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부터 제4항까지 중 “징수과장” 을 각각 “통합지출관, 징수과장”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징수과장” 을 “징수과장, 통합지출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관” 을 “통합지출관, 주관” 으로 한다.

제26조 중 “연1회” 를 “연 1회 이상”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50조” 를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 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 으로, “징수과장” 을 “통합지출관, 징수과장” 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출원” 을 “지출원, 통합지출관” 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재무관” 을 “통합지출관, 재무관” 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회계과장” 을 “통합지출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과장은 법 제53조 제4항” 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과장” 을 “통합지출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결산서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 을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 을 “다음연도 2월” 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40조 중 “영 제78조” 를 “시행령 제23조의 규정” 으로 한다.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2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제3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 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 을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 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영 제84조” 를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전단 중 “각 관·과·소장” 을 “통합지출관, 각 관·과·소장” 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징수과장은” 을 “통합지출관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 요구서 및” 으로, “지출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월별로” 를 “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각 관·과·소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과장이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 를 “통합지출관이 각 관·과·소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으로, “의회사무국장” 을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국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징수과장” 을 “통합지출관” 으로 한다.

제51조 중 “징수과장” 을 “통합지출관” 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을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의 어느 하나” 를 “시행령 제52조”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 를 “법 제45조” 로 한다.

제5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4조” 를 “시행령 제53조제2항 제3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50조에 의한 자금배정

제52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 을 “통합지출관” 으로, “제1항에 따른 임무” 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비와 집합지급은” 을 “경비는” 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단서 중 “아니한다” 를 “아니하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을 “경우에” 로, “만한” 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를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 로 한다.

제58조 전단 중 “(송금·집합)지급명령” 을 “(계좌·현금)지급명령” 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을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72호서식의 통상지급명령” 을 “별지 제73호서식의 현금지급명령” 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2조와 영 제91조” 를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 으로 한다.

제66조제5항 중 “영 제97조 제2호” 를 “시행령 제45조제2호” 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영 제27조” 를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징수과장” 을 “통합지출관 및 징수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과장” 을 “통합지출관” 으로 한다.

제73조제4항 중 “징수과장” 을 “통합지출관 및 징수과장” 으로 한다.

제77조제4항 중 “관리는 징수과장” 을 “관리·운영은 통합지출관” 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영 제104조제1항” 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 으로, “정리” 를 “의하여 정리” 로 한다.

제9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 를 “법 제38조의 규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3조” 를 “시행령 제49조” 로 한다.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2조부터 영 제103조까지” 를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49조의 규정” 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 을 “현금지급명령을” 로, “통상지급명령 통지서” 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을

“제1항의 규정”으로,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제113조 전단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채권자에게 송금”을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으로 한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16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감독”을 “관리·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6조”를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으로, “이를”을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로 한다.

제124조제3항 중 “의한 신용카드”를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로, “통한 구매의”를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단서 중 “등 현금으로”를 “등을”로, “영수인에 대하여”를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로 한다.

제133조제2항 중 “회계연도, 회계명,”을 “동일회계 내에”로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2항 중 “회계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중 “지출원”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6조 중 “1개월 이내에 시장”을 “1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46조 중 “영 제10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로, “규칙”을 “조례·규칙”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 중 “법 제91조”를 “법 제46조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9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로 한다.

제170조 중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9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 내지 제51조, 제52조의4 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49호서식>

과오납금원금반환명령

원 부

년도	회계	○○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정수관	
관	항	목	

과오납금반환통지

년도	회계	○○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정수관	직 성명	①
금고 귀하			

과오납금반환명령

년도	회계	○○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위 금액을 본명명서 지침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정수관	직 성명	①
금고 귀하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회계	○○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귀하			

<별지 제50호서식>

금고 귀하

원 부

과오납금계좌반환명령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회계	○○장수관 주관
채성명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장수관
관	항	부

년도	회계	○○장수관 주관
채성명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관 직	년 월 일	성명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장수관 주관
채성명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장수관	년 월 일	금고
		귀하

<별지 제72호서식> <삭제>

<별지 제73호서식>

(계좌·현금) 지급명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	지출원	금고
재		

(단위 : 원)

연번	지급명령번호	명령구분	입금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은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5호서식>

일상경비 교부서

제 호
수 신 :년 월 일
발 신 :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산 과 목					예 산 액	집 행 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액	비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 성 목	통 계 목			기 교 부	금회 교부	합 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6호서식>

일상경비 교부통지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일상경비교부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 목	통계 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위탁서

납입통지서

영수증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원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고지 번호	원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원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남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 번호	원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결	담당자	출납원	계장	과장	
재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원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남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고지 번호	원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남부자 귀하					

<별지 제81-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탁서

납입통지서

영수증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명	
현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명	
현금	
납부자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명	
현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남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
남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규칙 제636호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6월 15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신청 및 제출서류) ①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군산 어린이 공연장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군산 어린이 공연장(이하 “공연장” 이라한다)의 상반기 사용예약은 전년도 12월, 하반기 사용예약은 당해년도 5월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한다.

③ 대관신청은 공연 및 행사 책임 주최자가 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구두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대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예정일 45일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공연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한다.

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시설사용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군산시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와 개인이 결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3. 단체간 또는 개인간에 결합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4조(사용료 납부 등) ①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며 사용자는 사용허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계약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료 등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납부기한 전일까지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사용료 잔액을 납부 후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총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취소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군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행사 및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기본사용료 감면 : 학교장 또는 총장의 추천에 의한 재학생의 순수예술행사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

액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결재가 완료된 행사계획을 공연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연장 사용 등) ① 공연장 사용자는 공연을 할 경우 공연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하고 입장객으로부터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입장료에 관하여 미리 공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 사용자는 관람객을 수용가능 객석수를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

④ 공연과 관계되는 관측, 사인회 장소는 사전승인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

⑤ 사용자는 공연장의 사용시간의 내용,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⑥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⑦ 공연장을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아 반입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② 공연 및 전시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 측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권 발행) ① 입장권의 판매 및 매표관리는 사용자가 전담한다.

② 입장권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제10조(입장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입장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11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공연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사용자가 배치한 안전요원은 공연장 질서유지를 담당하며 공연지원스텝은 공연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안전요원 및 공연지원스텝의 인건비는 사

용자가 부담한다.

2. 사용자가 공연장의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져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군산 어린이 공연장 시설사용 허가서

■ 허가사항

사 용 자 (성 명 / 주 소)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 (일간)						
사 용 료 합 계		감면료		냉.난방 사용료		계	
사용료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 혹은 계좌이체()						
사용료 납부일자	계 약 금 :			원	일 까지		
	사용료잔액 :			원	일 까지		

■ 허가조건

1. 군산 어린이 공연장(이하 공연장)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과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2. 공연장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공연장에 그 책임을 전가 할 수 없습니다.
3. 공연장 시설 및 집기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허가취소
 - ①조례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②사용료를 체납하였을때
 - ③공익상 필요할 때 ④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뒷면]

■ 허가관련 공연(행사)의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

- ① 공연 셋업은 담당직원의 안전여부가 확인 된 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② 무대 반입 및 반출시 모든 물품은 담당직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③ 무대시설 사용시에는 공연장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④ 무대사용은 지정된 시간에 한하며, 출연자는 리허설 및 공연시간 이외의 무대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 ⑤ 공연장에서의 음식물, 음주, 흡연을 금지 합니다.
- ⑥ 공연 중 사진 촬영 및 꽃다발 등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 ⑦ 출연자들은 객석에서 무대로의 불필요한 이동을 삼가 주십시오.
- ⑧ 화재/비상시에는 안내방송 및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여 주십시오.
- ⑨ 무대에서는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화약류 및 유류, 가스통 등의 위험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⑩ 출연자는 분장 후 로비 및 외부로의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⑪ 방염처리가 확인되지 않은 무대장치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 ⑫ 무대에서의 모든 작업 및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장비 등을 설치할 때는 무대감독과 협의 후 진행하여 주십시오.
- ⑬ 기념촬영은 리허설 시에만 가능합니다. 공연 종료 후에는 무대안전과 원활한 무대 철수를 위해 촬영을 금지합니다.
- ⑭ Staff회의 시 협의한 무대시설 사용 내용에 따라 공연진행하여 주십시오.
- ⑮ 무대 및 객석의 공연장 시설물 사용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⑯ 리허설, 공연 시 출연자 및 관객에게 위협이 되는 연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⑰ 출연진/STAFF 외 무대 출입을 절대 금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군산 어린이 공연장 허가대장

허가		공연명	신청인		사용일	공연내용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주소			

[별지 제7호서식]

군산 어린이 공연장 사용료 감면신청서

공연·전시·행사 명칭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			연락처	핸드폰		
					사무실		
공연·전시·행사의 내용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시설						
	부대시설						
감면신청사유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 추천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검 인 부

일련 번호	검 인 년월일	입장권의 종류 ()	매수	검인자	확인자	비고
				성 명	성 명	

군산시 공고 제2017-1045호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센터 대관 가능 시설 및 설비 범위 규정(안 제8조의2 제1항)
- 나. 시설 사용료 및 감면 범위 규정(안 제8조의2 제2항, 제3항)
- 다. 사용료 반환 요건 및 금액 규정(안 제8조의2 제4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7월 5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가족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oksoks40@korea.kr
- 2) 주소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가족청소년과
- 3) 팩스 : 063-452-94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가족청소년과(전화 : 063-454-31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 호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센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대관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 세미나실, 교육실, 조리실, 김장공간
2. 부대설비 : 음향기기, 냉난방시설, 프로젝터

② 그 대관료와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후원하는 행사 : 50% 감면 (부대설비사용료 제외)
3.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사 : 50% 감면 (부대설비사용료 제외)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④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국가적 행사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예정일 전에 대관 취소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8조의2(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센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대관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기본시설 : 강당, 세미나실, 교육실, 조리실, 김장공간</u></p> <p>2. <u>부대설비 : 음향기기, 냉난방시설, 프로젝터</u></p> <p><u>② 그 대관료와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u></p> <p>1. <u>국가 또는 군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u></p> <p>2.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후원하는 행사 : 50% 감면 (부대설비사용료 제외)</u></p> <p>3. <u>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사 : 50% 감면 (부대설비사용료 제외)</u></p>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④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국가적 행사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예정일 전에 대관 취소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별표 1]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대관 및 부대설비 사용료 (제8조2 관련)

1. 시설대관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원)		비 고
		일 반	50% 감면 시	
강 당	1회(4시간)	100,000	50,000	1.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매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한다. 2. 토 ·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 사용료로 한다.
세미나실	1회(4시간)	50,000	25,000	
교 육 실	1회(4시간)	50,000	25,000	
조 리 실	1회(4시간)	50,000	25,000	
김장공간	1일	50,000	25,000	

2. 부대설비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원)	비 고
음향	음향기기	1회	무상	
	유선마이크	1회(2개)	무상	
	무선마이크	1회(1개)	무상	
기타설비	냉·난방	대강당	1회(4시간)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매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한다.
		기타	1회(4시간)	
	빔 프로젝트		1회(4시간)	

군산시 고시 제2017 - 7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 미룡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명 칭 : (유)토우산업개발

나. 대표자 : 정종석

다.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433, 301호(우아동 2가)

3. 사업내용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121번지의 48필지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분양)

다. 대지면적 : 24,598.0000㎡

라. 건축면적 : 5,555.6300㎡

마. 연 면 적 : 72,490.5000㎡

바.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8~22층 /아파트 8개동 외, 총585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비고
계		585				
59A	민영주택	135	59.7500	19.5500	79.3000	
59B	민영주택	204	59.9800	19.6600	79.6400	
59C	민영주택	105	59.5800	20.2000	79.7800	
82A	민영주택	17	82.9500	26.5200	109.4700	
82B	민영주택	70	82.4700	25.8400	108.3100	
82C	민영주택	54	82.8600	26.9100	109.7700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117,544,735천원

차. 사업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 2019년 9월 30일

4.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주택법 제17조 1항에 의한 고시

-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6. 사업계획승인일 : 2017. 6. 2.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25,785	-	25,785	100.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미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미룡동 121번지 일원	-	증)25,785	25,785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결정 사유
신설		군산시 미룡동 121번지 일원	25,7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시가지 확산 및 도시 관리를 유도하고 대상지의 미관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원활한 공동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00	15	국지 도로	38	중로 2-59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 도로	미룡 신시가지	-	
기정	중로	2	59	15	보조 간선	486	소로 1-274	대로 2-10	일반 도로	미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중로	2	59	15~ 19	보조 간선	486	소로 1-274	대로 2-10	일반 도로	미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기정	소로	2	666	8	국지 도로	540	소로 2-668	소로 2-676	일반 도로	미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2	666	8	국지 도로	21	소로 2-668	소로 2-669	일반 도로	미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기정	소로	2	669	8	국지 도로	211	중로 2-59	미룡동 산242-11 은파유원지경계	일반 도로	미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2	669	8~ 11	국지 도로	211	중로 2-59	미룡동 산242-11 은파유원지경계	일반 도로	미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폐지	소로	2	670	8	국지 도로	97	소로 2-666	소로 2-675	일반 도로	미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폐지	소로	2	671	8	국지 도로	126	중로 2-59	소로 2-666	일반 도로	미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폐지	소로	2	672	8	국지 도로	70	소로 2-666	소로 2-675	일반 도로	미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폐지	소로	2	673	8	국지 도로	95	중로 2-59	소로 2-666	일반 도로	미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기정	소로	2	674	8	국지 도로	38	소로 2-666	소로 2-675	일반 도로	미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2	674	8	국지 도로	253	소로 2-676	소로 2-673	일반 도로	미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기정	소로	2	675	8	국지 도로	498	소로 2-669	소로 2-677	일반 도로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2	675	8	국지 도로	286	중로 2-0	소로 2-677	일반 도로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 도로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중로 2-00	○ 도로 신설 - 연장 : 38m, 폭원 : 15	○ 지구단위계획구역(아파트)의 진입도로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계획 도로 신설
변경	중로 2-59	중로 2-59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15m → 19m(증 4m)	○ 지구단위계획구역(아파트)신설에 따른 일부 구간 도로 폭원 확폭(가감속차로 계획)
변경	소로 2-666	소로 2-666	○ 연장 및 기종점 변경 - 연장 : 540m → 21m(감 519m)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도로 노선 변경 및 도로 기종점 변경
변경	소로 2-669	소로 2-669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8m → 11m(증 3m)	○ 지구단위계획구역(아파트)신설에 따른 일부 구간 도로 폭원 확폭(가감속차로 계획)
폐지	소로 2-670	-	○ 도로 폐지	○ 지구단위계획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폐지
폐지	소로 2-671	-	○ 도로 폐지	○ 지구단위계획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폐지
폐지	소로 2-672	-	○ 도로 폐지	○ 지구단위계획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폐지
폐지	소로 2-673	-	○ 도로 폐지	○ 지구단위계획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폐지
변경	소로 2-674	소로 2-674	○ 연장 및 기종점 변경 - 연장 : 38m → 253m(증 215m)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도로 노선 변경 및 도로 기종점 변경
변경	소로 2-675	소로 2-675	○ 연장 및 기종점 변경 - 연장 : 498m → 286m(감 212m)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도로 노선 변경 및 도로 기종점 변경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	1	25,785	공동①	군산시 미룡동 121번지 일원	25,785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	공동①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4호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계획:22.59%	
		용적률	· 250% 이하	계획:219.51%	
		높 이	· 8~22층 이하	-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을 하고 군산시 건축조례(공동주택기준)에 의거하여 배치 채광·통풍을 고려 한 배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경사지붕 설치 및 조형물 설치 담장 : 가로경관 향상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및 조경 담장 계획 		
		색채	-		
건축선	-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미룡동 121번지 외 20필지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칭 : 군산 미룡동 아파트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중로2-00호선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노선명			결정조서		기개설조서		금회시행조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개설폭원 (m)	연장 (m)	개설폭원 (m)	연장 (m)	면적 (㎡)	
도로	중로	2	00	15	38	-	-	15	38	587	개
	중로	2	59	19	486	19	486	4	219	462	확폭구간 개설
	소로	2	669	11	211	11	211	3	44.2	138	확폭구간 개설
계	3개노선				735		697		301.2	1,187	

4.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433, 301호(우아동 2가)
- 2) 사업시행자 성명 : 유한회가 토우산업개발 대표자 정종석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주택건설사업 승인일 ~ 2019.08.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제 실음생략
8. 관계도서 : 계제 실음생략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중로2-00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관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군산시 미룡동	129	전	387	157	유순덕	군산시 용둔길 19-7	항등농협 협동조합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906	지상권	
2	군산시 미룡동	108-2	대	482	3	김요경	군산시 미룡동 108-3				
3	군산시 미룡동	108-3	대	391	351	김요경외1인	군산시 미룡동 108-3	김혜숙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37-102	공유자(1/5)	
4	군산시 미룡동	130-3	대	75	18	국(재무부)					
5	군산시 미룡동	834-23	도	2273	43	국(건설부)					
6	군산시 미룡동	106-2	전	15	15	국(재무부)					
계	6필지			3,623	587						

○ 중로2-59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관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군산시 미룡동	121	대	1,210	35	김상원	군산시 나운동 100-11 롯데3차 @201/103				
2	군산시 미룡동	120-1	전	44	44	김상원	군산시 나운동 100-11 롯데3차 @201/103				
3	군산시 미룡동	122	전	257	90	조계옥	군산시 나운동 793-1,2 한신@108/102				
4	군산시 미룡동	110	전	49	26	김영석	군산시 미룡동 130-1				
5	군산시 미룡동	242-1 산 4	임	3,051	20	유재옥	군산시 미룡동 138-216				
6	군산시 미룡동	123-1	전	178	46	김춘경	군산시 미룡동 124				
7	군산시 미룡동	123-2	도	23	12	김춘경	군산시 미룡동 124				
8	군산시 미룡동	123-3	전	9	6	김춘경	군산시 미룡동 124				
9	군산시 미룡동	120-5	전	37	35	박미경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239, 108/1103	박미자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00, 121/1001	공유자 (18.5/81)	
10	군산시 미룡동	246-3 산 4	임	468	44	박미경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239, 108/1103	박미자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00, 121/1001	공유자 (18.5/81)	
11	군산시 미룡동	62-4	대	323	99	최수웅	군산시 미제길 62-4				
계	11필지			5,649	457						

○ 소로2-669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군산시 미룡동	109-1	전	229	4	김영석	군산시 미룡동 130-1				
2	군산시 미룡동	61-5	유	194	9	군산시					
3	군산시 미룡동	59-63	유	5	26	군산시					
4	군산시 미룡동	62	대	323	99	김형석	군산시 용둔길 1-16				
계	4필지			751	138						

군산시 고시 제2017-75호

2017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시공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군산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7년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의 관리,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2017 선유도해수욕장 관리계획】

운영개요

○ 개장기간 : 2017. 7. 1.(토) ~ 8. 15.(화) / 46일간

※ 개 장 식

- 일 시 : 2017. 7. 6.(목) 15:00 / 선유도해수욕장 상설무대
- 행사내용 : 식전행사, 개장식 및 축하공연 등
- 주최/주관 : 군산시

○ 근무내용 : 관광안내, 질서계도, 사고예방 등 2박3일 교대

주요 운영·관리 내용

- 실무협의회의 및 현지점검 등
- 시설 기능보강 및 정비·보수 정비
- 질서유지·불법행위 단속 : 연중 / 전문단속반
 -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철저
 - 공중화장실 향시 청결유지(8개소), 노상적치물 정비 등
- 주변 환경정비 등 깨끗한 관광지 조성
- 다양한 이벤트 개최로 오감이 즐거운 관광지 조성

근무자 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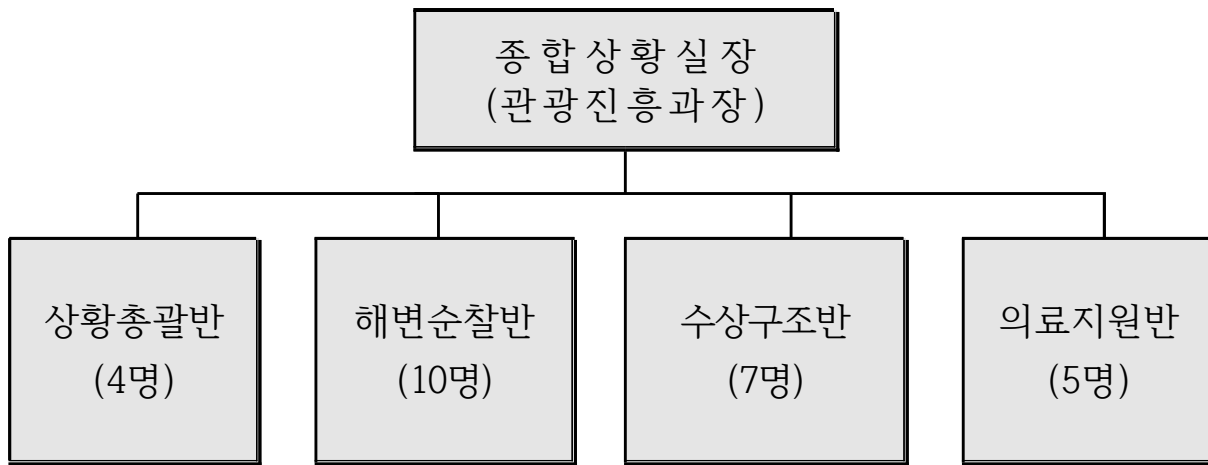
㉠ 근무자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17. 7. 1. (토) ~ 2017. 8. 15. (화) / 46일간
 - ※ 종합상황실장 : 관광진흥과장
- 근무시간 : 8시간 (09:00 ~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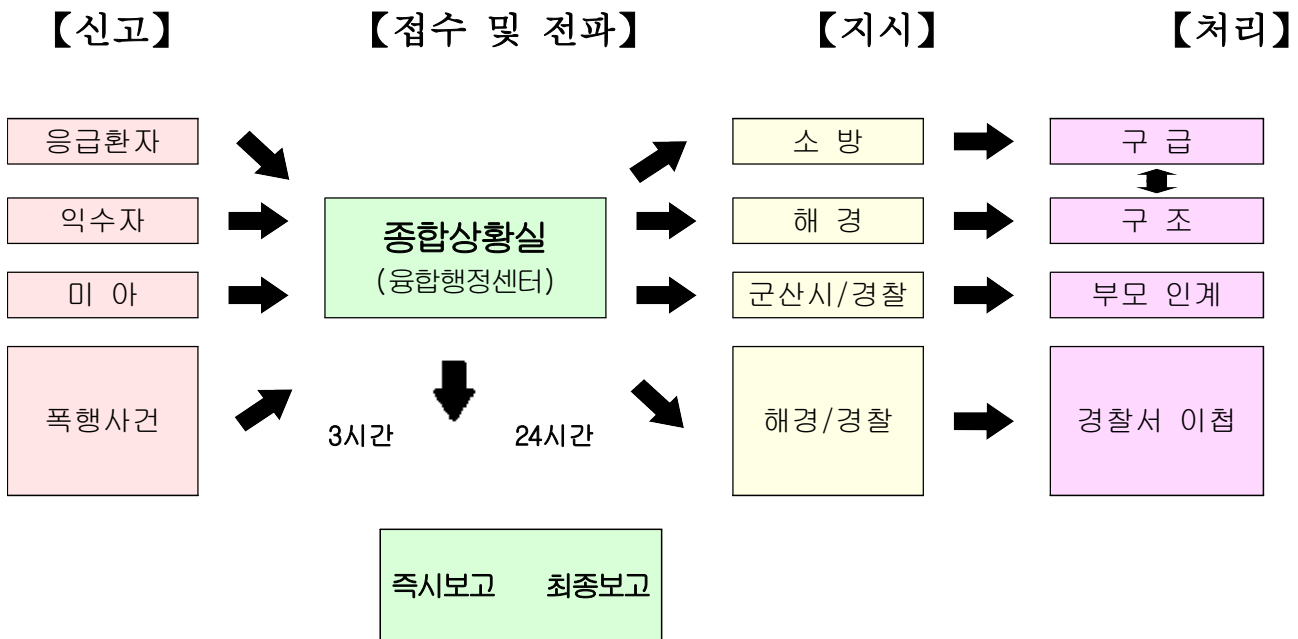
- 근무장소 : 선유도 시정안내소(1개소)
- 운영내용 : 안전종합관리 및 관광안내 *의료지원 보건소 별도
- 근무인원 : 1일 21명(7. 1 ~ 8. 15.)

시		해양경비안전서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공무원	안전요원			
2	8	3	4	4

2 운영조직 체계



3 보고 처리 체계



③ 반별 구성 및 근무형태

구분	인력	기관별 구성	근무형태	비고
계	21			
상황총괄반	4	시청 2, 경찰 2	교대근무	
순찰반	10	안전요원 4, 경찰 2, 소방 4	교대근무	수상구조반 협력구호
수상구조반	7	해경 3, 안전요원 4	교대근무	순찰반 협력구호
의료지원	5	의사 3, 간호사 2	상시근무	별도 (선유도보건지소)

④ 반별 임무

상황총괄반

- 종합상황유지 및 정보공유체계 확립, 대책회의 운영
- 기관별 협조사항 점검·관리
- 기상이변에 따른 해수욕장 입수 통제
- 해파리 등 유해생물 제거 및 입수 통제
- 사건·사고 동향파악 및 관계기관 상황보고
- 안전요원 및 장비배치 등 총괄 조정·감독
- 안전교육 및 구명조끼 대여 등 사고예방대책 추진
- 분야별(물놀이안전, 범죄 등) 안전사고 예방 방송홍보
- 피서객 불편사항처리 및 관광안내
- 종합상황실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순찰반

- 해변 및 해상 인명구조 순찰(안전관리자 및 경찰 계도활동 등 병행)
- 긴급 상황발생시 종합상황실 보고
- 필요시 구조·구급팀 지원요청
- 감시탑 운영 (민간 안전관리자)
- 해변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불꽃놀이) 지도단속(경찰)
- 선유도해수욕장내 발생 사건수사 총괄

- 미아 발생시 접수, 소재파악을 통한 부모인계
- 관할구역 지정 역할분담

구 분	순 찰 구 간	비 고
경 찰	▪ 육상 전 구간	선유도파출소
해 경	▪ 해상 전 구간(수상 인명구조)	
소 방	▪ 육해상 전 구간(응급환자 후송)	

수상구조반

- 상황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 전개
- 장비운용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수시)
- 망루, 부표 등 안전장비 수시 점검
- 상황발생에 대비, 보유 장비 점검·정비
- 피서객대상 안전교육 및 체험실시
- 사건·사고 발생 시 구조자 현장 응급조치
- 구조자 및 사망자 인근병원 후송

기관단체별 협조사항

구 분	주요 협조·운영사항	비고
군산시, (사)군산해병전우회	•개장기간 중 안전관리 총괄	
군산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물놀이 경계 밖 유영활동제제 •안전사고자 구급활동 •익수사고자 구명활동	
군산경찰서	•치안, 교통 질서유지 등	
군산소방서	•구조자 및 사망자 인근병원 후송	
선유도번영회 선유도통합청년회 등	•물가안정 제도 •관광홍보 및 안내, 질서유지	

주요시설현황

- 시설현황

합계	시정 안내소	파코파	샤워장	화장실	짚파라솔	급수대 및 음수대	여름 차안센터	야외 무대	비고
39	1	12	1	8	13	2	1	1	

○ 일부시설 관리운영 계획

시설물명 및 위치		규 모	운영방식	비 고
공영샤워장	1개소	샤워기 12개(남) 샤워기 12개(여)	직영	
시정안내소	종합안내	1층	직영	
야외무대	1개소	100.9m ²		

□ 단속·제한사항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수시단속)
- 무허가단속 (관광지 내 무허가 건축물단속)
- 부당요금 불친절 관리 (상거래 질서 유도)
- 기타 불법행위 근절 (불법행위 발생 시 종합상황실에 신고)

【2017 선유도해수욕장 운영기간 변경】

구 분	2016년		2017년	
	개장기간	개장시간	개장기간	개장시간
선유도해수욕장	7. 2.~8. 15.	09:00~18:00	7. 1.~8. 15.	09:00~18:00

군산시 고시 제2017-76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5-111호(2015.08.21.) 및 제2016-66호(2016.05.27.)와 관련하여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 조성공사” 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 사업
 - 나. 명 칭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광장)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당초 64,892㎡ → 69,311㎡ (증 4,419㎡)
 - 가. 도 로(12개 노선) : 45,163㎡ → 50,713㎡ (증 5,550㎡)

연번	노 선 명	실시계획(당초)			실시계획(변경)			비고
		폭원(m)	연장(m)	면적(㎡)	폭원(m)	연장(m)	면적(㎡)	
	계	-	2,752	45,163	-	3,364	50,713	
1	대로1-4	35~38	164	401	35~41	164	789	1차분
2	대로2-4	30~33	249	226	30~33	249	226	1차분
3	대로3-6	25~28	343	1,040	25~31	894	3,231	1차분
4	대로3-47	25~31	715	18,575	25~31	715	18,575	1차분
					25~31	341	9,941	1차분
5	대로3-48	25~31	422	11,883	25~31	142	3,563	2차분
					25~31	142	3,563	2차분
6	중로2-142	15	170	2,585	15	170	2,585	2차분
7	중로2-143	15	311	5,273	15	311	6,264	1차분

연번	노 선 명	실시계획(당초)			실시계획(변경)			비고
		폭원(m)	연장(m)	면적(m ²)	폭원(m)	연장(m)	면적(m ²)	
8	중로2-147	15	92	1,449	15	92	1,449	1차분
9	중로2-148	15	129	1,997	18.5	129	2,356	1차분
10	중로3-74	12	49	602	12	49	602	2차분
11	중로3-75	12	68	838	12	68	838	2차분
12	소로3-773	7	40	294	7	40	294	1차분

나. 녹 지(6개소) : 16,687㎡ → 16,240㎡ (감 447㎡)

연번	시설명	시설의 세분	실시계획면적(㎡)			비고
			당초	증감	변경	
	계	-	16,687	감 447	16,240	
1	녹지	완충녹지108	3,857		3,857	1차분
2	녹지	완충녹지113	1,865	감 392	1,473	
3	녹지	완충녹지114	3,220		3,220	
4	녹지	완충녹지115	2,390		2,390	
5	녹지	완충녹지116	766	증 5	771	
6	녹지	연결녹지117	4,589	감 60	4,529	

다. 광 장(1개소) : 3,042㎡ → 2,358㎡ (감 684㎡)

연번	시설명	시설의 세분	실시계획면적(㎡)			비고
			당초	증감	변경	
1	광장	광장32	3,042	감 684	2,358	1차분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대표이사 박건표

(주)디오션시티퍼스트 대표이사 고영호

(주)디오션시티투 대표이사 이명철

5. 사업기간(변경) : 준공예정일 변경 및 단계별 준공

· (당초) 2015. 8. 21. ~ 2017. 12. 31.

· (변경) 1차분 : 2015. 8. 21. ~ 2018. 3. 31.

2차분 : 2015. 8. 21. ~ 2019. 3.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별도 첨부)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실음 생략

8. 관계도서(변경) : 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1) 대로 1-4호선 (변경, 1차분)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450-13	대	11,477	20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50-20	대	866	83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획지 분할 도로 확폭
기정	2	조촌동	450-14	대	970	6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50-14	대	475	2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획지 분할 도로 확폭
기정	3	조촌동	465-1	대	34	24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65-1	대	34	3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도로 확폭
기정	4	조촌동	465-5	구	261	17	군산시					
변경		조촌동	465-5	구	261	36	군산시					도로 확폭
기정	5	조촌동	471-2	구	13,976	30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변경		조촌동	471-2	구	13,445	55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획지 분할 도로 확폭
기정	6	조촌동	711-9	도	300	15	국토교통부					
변경		조촌동	711-9	도	300	30	국토교통부					도로 확폭
기정	7	조촌동	716-2	구	288	17	국토교통부					
변경		조촌동	716-2	구	288	35	국토교통부					도로 확폭
기정	합 계				27,306	401						
변경					15,669	789						

2) 대로 2-4호선 (변경없음, 1차분)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구암동	320-4	장	387	82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 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신한캐피탈(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30-1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은행로38											
기정	2	구암동	321-8	대	379	33	군산시					
기정	3	조촌동	2-6	장	57,284	111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				58,050	226						

3) 대로 3-6호선(변경, 1차분)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신규	1	조촌동	2	장	286,074	10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역 확장
신규	2	조촌동	41	장	20,816	561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역 확장
신규	3	조촌동	447-3	구	126	81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역 확장
신규	4	조촌동	465-1	대	34	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역 확장
신규	5	조촌동	479-2	구	2,307	918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역 확장
신규	6	조촌동	564-1	구	63	30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역 확장
신규	7	조촌동	568-4	구	69	48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역 확장
기정	8	조촌동	2-6	장	136,947	4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70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획지 분할 도로 확폭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9	조촌동	439-4	도	1,049	458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39-4	도	1,049	537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 확폭
기정	10	조촌동	447-4	구	182	42	군산시					
변경		조촌동	447-4	구	182	74	군산시					도로 확폭
기정	11	조촌동	450-3	구	380	86	군산시					
변경		조촌동	450-3	구	380	174	군산시					도로 확폭
기정	12	조촌동	465-5	구	261	67	군산시					
변경		조촌동	465-5	구	261	76	군산시					도로 확폭
기정	13	조촌동	472-4	잡	89	24	군산시					
변경		조촌동	472-4	잡	89	52	군산시					도로 확폭
기정	14	조촌동	473-2	도	770	200	군산시					
변경		조촌동	473-2	도	770	388	군산시					도로 확폭
기정	15	조촌동	474-5	대	175	2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74-5	대	175	70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 확폭
기정	16	조촌동	479-3	구	273	69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7	조촌동	711-9	도	300	14	국토교통부					
변경		조촌동	711-9	도	300	28	국토교통부					도로 확폭
기정	18	조촌동	716-2	구	288	16	국토교통부					
변경		조촌동	716-2	구	288	43	국토교통부					도로 확폭
기정	합 계				140,714	1,040						
변경					370,540	3,231						

4) 대로 3-47호선 : 변경없음 (필지분할, 1차분)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구암동	320-4	장	387	73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주)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신한캐피탈 (주) 경기도 안산시 단 원구 고잔동 530-1			
									한국수출입 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은행로38			
기정	2	구암동	321-8	대	379	104	군산시					
기정	3	조촌동	2	장	288,000	816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근저당	
									한국산업은 행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여의도동 16-3			
									(주)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신한캐피탈 (주) 경기도 안산시 단 원구 고잔동 530-1			
									한국수출입 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은행로38			
기정	4	조촌동	2-6	장	136,947	17,425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17,425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기정	5	조촌동	479-3	구	273	157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변경	합 계				425,986	18,575						
					346,323	18,575						

5) 대로 3-48호선 (변경, 1·2차분)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신규	1	경암동	610	도	290	1	국토교통부					구역외 도로
신규	2	조촌동	664-9	잡	1,561	1,561	페이퍼코리아 (주)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구역외 도로
신규	3	조촌동	713	도	405	3	국토교통부					구역외 도로
신규	4	조촌동	732	구	1,455	35	국토교통부					구역외 도로
신규	5	조촌동	659-4	대	139	1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 헤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도로 확폭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기정	6	조촌동	2	장	288,000	4,613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 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1차분
변경									쥬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변경	조촌동	2	장	288,000	3,563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 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기정	7	조촌동	2-6	장	136,947	4,985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 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신한캐피탈(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1	2차분	
									한국수출입 은행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은행로38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4,853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 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구적 오차	
기정	8	조촌동	471-2	구	13,976	46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필지 분할
변경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9	조촌동	651-4	대	7,220	381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 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변경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 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0	조촌동	651-8	구	586	5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도로 확폭
변경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11	조촌동	659	대	6,608	1,190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 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도 로 확폭
변경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 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2	조촌동	661-2	구	982	202	이서운	군산시 나운동 155-1 우신동영아파트 105동 1502호	광주시방고용 노동청이신청		압류	지분 3/9
									유현수	군산시 나운동 109-6 나운4차 현대아파트 401동 1203호	근저당	
									김미숙	군산시 나운동 155-1 우신동영아파트 105동 1502호		지분 2/9
									김병관	군산시 나운동 155-1 우신동영아파트 105동 1502호	유현수	군산시 조촌동 771 신우하나로 아파트 1220호
							김미자	군산시 나운동 155-1 우신동영아파트 105동 1502호			근저당	지분 2/9
기정	합 계				454,319	11,883						
변경					367,888	13,504						

6) 종로 2-142호선 : 변경없음(필지분할, 2차분)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기정	1	조촌동	2	장	288,000	1,594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한국산업은 행	서울시특별시 영등 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시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신한은행	서울시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주)하나은행	서울시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신한캐피탈 (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30-1			
								한국수출입은 행	서울시특별시 영등 포구 은행로38			
기정	2	조촌동	2-6	장	136,976	991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 헤란로 508, 10층(대치 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991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 헤란로 508, 10층(대치 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기정	합 계				424,976	2,585						
변경					345,284	2,585						

7) 종로 2-143호선 : 변경 (1차분)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기정		조촌동	2-6	장	136,947	2,768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1	조촌동	2-6	장	57,284	3,229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도로 확폭
변경		조촌동	2-8	장	6,003	171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도로 확폭
변경		조촌동	2-10	장	17	17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도로 확폭
기정		조촌동	450-13	대	11,477	1,394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2	조촌동	450-13	대	1,303	1,303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변경		조촌동	450-21	대	9,175	296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도로 확폭
기정	3	조촌동	450-2	대	7,701	653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변경		조촌동	450-2	대	1,722	628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적 오차
변경		조촌동	450-18	대	4,998	143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 확폭
기정	4	조촌동	471-2	구	13,976	45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변경		조촌동	471-2	구	13,445	47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도로 확폭
기정	합 계				170,101	5,273						
변경	합 계				93,947	6,264						

8) 종로 2-147호선 : 변경없음 (1차분)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57,284	1,449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				57,284	1,449						

9) 종로 2-148호선 : 변경 (1차분)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기정		조촌동	2-6	장	136,947	1,889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1	조촌동	2-6	장	57,284	1,865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 확폭
변경		조촌동	2-8	장	6,003	400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 확폭
기정	2	조촌동	439-4	구	1,049	108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39-4	구	1,049	91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 확폭
기정	합 계				425,996	1,997						
변경	합 계				64,336	2,356						

10) 종로 3-74호선 : 변경없음 (2차분)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	장	288,000	602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 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 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주)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120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신한캐피탈(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 잔동 530-1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 행로38		
기정	합 계			288,000	602							

11) 종로 3-75호선 : 변경없음(필지분할, 2차분)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136,947	838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838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기정	합 계			136,947	838							
변경	합 계			57,284	838							

12) 소로 3-773호선 : 변경없음 (1차분)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136,947	294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			136,947	294							

나. 공간시설

(1) 녹지

1) 완충녹지108 : 변경없음(필지분할, 1차분)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구암동	321-14	대	453	17	군산시					
변경		구암동	321-14	대	47	47	군산시				구적 오차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2	구암동	321-15	도	653	24	군산시					
기정	3	구암동	512-20	도	218	13	군산시					
기정	4	구암동	513-1	장	2,460	656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구암동	513-1	장	623	623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적 오차
기정	5	구암동	513-5	대	1,834	867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구암동	513-5	대	987	867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기정	6	구암동	516-1	대	413	253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구암동	516-1	대	381	253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기정	7	구암동	607-1	구	205	52	국토교통부					
기정	8	구암동	608-1	도	169	19	국토교통부					
기정	9	구암동	609-1	구	33	14	국토교통부					
기정	10	조촌동	2-6	장	136,947	779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779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기정	11	조촌동	649-2	대	2,420	368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649-2	대	448	368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기정	12	조촌동	651-8	구	586	104	한국영어중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13	조촌동	659	대	6,608	110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659	대	3,324	110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기정	14	조촌동	660-10	대	678	333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660-10	대	441	333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기정	15	조촌동	660-8	철	750	66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660-8	철	67	67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적 오차
기정	16	조촌동	661-5	철	122	81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7	조촌동	712	도	56	14	국토교통부					
기정	18	조촌동	732	구	1,455	87	국토교통부					
변경		조촌동	732	구	1,455	89	국토교통부					구적 오차
기정	합 계				156,060	3,857						
변경					65,057	3,857						

2) 완충녹지113 : 변경 (1차분)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450-1 3	대	11,477	845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50-2 0	대	866	783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 확폭 필지 분할
기정	2	조촌동	450-1 4	대	970	154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50-1 4	대	475	147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 확폭 필지 분할
기정	3	조촌동	471-2	구	13,976	83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변경		조촌동	471-2	구	13,445	50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도로 확폭 필지 분할
기정	4	조촌동	711-9	도	300	28	국토교통부					
기정	5	조촌동	716-2	구	288	6	국토교통부					
기정	합 계				27,011	1,865						
변경					15,374	1,473						

3) 완충녹지114 : 변경없음(필지분할, 1차분)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450-1 5	대	9,917	999	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671-13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을지로 1가)	근저당	
기정	2	조촌동	450-1 6	대	2,849	445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50-1 6	대	1,077	445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기정	3	조촌동	471-2	구	13,976	11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변경		조촌동	471-2	구	13,445	11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필지 분할
기정	4	조촌동	659	대	6,608	1,420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659	대	3,324	1,420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기정	5	조촌동	659-1	대	2,044	245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659-1	대	354	245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기정	합 계				35,394	3,220						
변경					28,117	3,220						

4) 완충녹지115 : 변경없음(필지분할, 1차분)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136,947	516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516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기정	2	조촌동	450-1 5	대	9,917	342	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을지로 1가)	근저당	
기정	3	조촌동	450-1 6	대	2,849	438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50-1 6	대	1,077	438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기정	4	조촌동	450-2	대	7,701	1,094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50-2	대	1,722	1,094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기정	합 계				157,414	2,390						
변경					70,000	2,390						

5) 완충녹지116 : 변경 (1차분)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136,947	766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570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도로 확폭
변경		조촌동	2-9	장	201	201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 분할 도로 확폭
기정	합 계				136,947	766						
변경					57,485	771						

6) 연결녹지117 : 변경 (1차분)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136,947	4,589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4,529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 확폭
기정	합 계				136,947	4,589						
변경					57,284	4,529						

(2) 광장

1) 광장32 : 변경 (1차분)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136,947	58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49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 확폭 필지 분할
기정	2	조촌동	439-4	구	1,049	15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39-4	구	1,049	4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 확폭
기정	3	조촌동	447-2	전	23	23	군산시					
기정	4	조촌동	447-3	구	126	12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47-3	구	126	4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 확폭
기정	5	조촌동	447-4	구	182	50	군산시					
변경		조촌동	447-4	구	182	18	군산시					도로 확폭
기정	6	조촌동	450-14	대	970	30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7	조촌동	450-2	대	7,701	29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50-19	대	308	30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적 오차
기정	8	조촌동	450-13	대	11,477	13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50-22	대	133	13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적 오차
기정	9	조촌동	450-3	구	380	127	군산시					
변경		조촌동	450-3	구	380	55	군산시					도로 확폭
기정	10	조촌동	450-5	구	76	76	군산시					
기정	11	조촌동	450-6	대	159	15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제외	12	조촌동	465-1	대	34	1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 확폭
제외	13	조촌동	465-5	구	261	38	군산시					도로 확폭
기정	14	조촌동	472-4	잡	89	62	군산시					
변경		조촌동	472-4	잡	89	34	군산시					도로 확폭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5	조촌동	472-7	구	23	23	군산시					
기정	16	조촌동	472-8	잡	40	40	군산시					
기정	17	조촌동	473-2	도	770	433	군산시					
변경		조촌동	473-2	도	770	235	군산시					
기정	18	조촌동	474-3	구	139	139	군산시					
기정	19	조촌동	474-5	대	175	121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74-5	대	175	73	코리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 확폭
기정	20	조촌동	711-9	도	300	67	국토교통부					
기정	21	조촌동	716-2	구	288	78	국토교통부					
기정	합 계				161,20 9	3,042						
변경						62,514	2,358					

군산시 고시 제2017 - 78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군산시 옥구어린이집, 군산문화원(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1. 목 적

군산시의 교통약자보호 및 각종 사고예방 목적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www.gunsan.go.kr)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7. 06. 15. ~ 2017. 07. 05.(20일)

5.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7.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군산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7. 06. 15. ~ 2017. 07. 05.(20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3-454-3769)

다. 접 수 처 : 전라북도 군산시 교통행정과 (☎)063-454-7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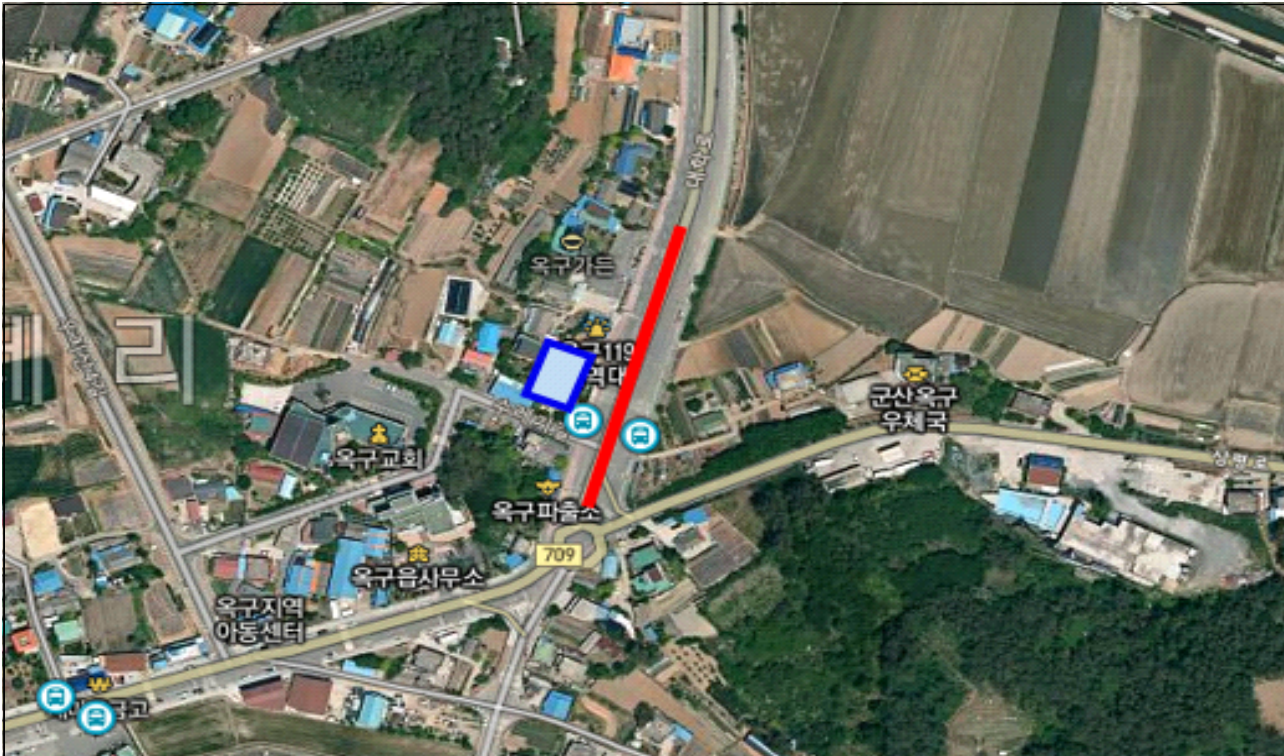
라. 보내실 곳 : (우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청) 교통행정과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6.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옥구어린이집]



[군산문화원(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붙임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예 고 내 용	군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군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고시 제2017 - 79호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군산시 선양경로당, 늘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1. 목 적

군산시의 교통약자보호 및 각종 사고예방 목적의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www.gunsan.go.kr)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7. 06. 15. ~ 2017. 07. 05.(20일)

5.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7.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군산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7. 06. 15. ~ 2017. 07. 05.(20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3-454-3769)

다. 접 수 처 : 전라북도 군산시 교통행정과 (☎)063-454-7914

라. 보내실 곳 : (우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청) 교통행정과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6.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선양경로당]



[늘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붙임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예 고 내 용	군산시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군산시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공고 제2017-99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4-141(2014.12.26.)호로 최초 결정되어 군산시 고시 제2017-9(2017.01.16.)호로 조성계획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일
군 산 시 장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17.06.02~2017.06.16.)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2-6번지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사업
 - 나. 명 칭 :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5.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5,675㎡
 - 가. 제91호 어린이공원 : 3,264㎡, 제92호 어린이공원 : 2,411㎡
6.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페이퍼코리아(주) 대표이사 박건표
(주)디오션시티퍼스트 대표이사 고영호
(주)디오션시티투 대표이사 이명철
 -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번지

7.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18. 10. 31.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조촌동	2-6	장	42,233	5,675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합 계			42,233	5,675						

9.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가. 무상양도시설 : 해당없음

나. 무상귀속시설

구 분	위 치	면적(m ²)	귀속기관	비 고
토 지	조촌동 2-6	5,675	군산시	
시설물	제91호어린이공원	3,264		
	제92호어린이공원	2,411		

10. 관계도서 : 실음 생략

11. 기타 :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7-104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대로2-11)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호선)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일
군 산 시 장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017.06.16. ~ 2017.06.30.)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139-6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2) 명 칭 : 도시계획도로(대로2-11호선) 개설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도로폭원 : 30.0m, 연장 : 706m, 면적 : 19,212㎡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붙임참고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공사및보상관련: ☎454-3523, 인허가관련: ☎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정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	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군산	지곡	64-4	구	859	16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	“	“	137-9	구	302	9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	“	“	63-1	구	13	1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4	“	“	63-1	구	13	1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5	“	“	137-9	구	302	9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6	“	“	327	답	2,992	5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81, 103동 805호(평화동2가,미송평화하이즌아파트)	이재규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22	임실농업협동조합	
									전주시 완산구 구룡1길 9-9, 401호(효자동2가)	정향	
7	“	“	128	답	1,157	416	군산시 하나운로 48, 203동401호(나운동,롯데3차아파트)	고형구	군산시 조촌동 774	군산농업협동조합	
8	“	“	128-3	답	991	636	군산시 구영4길 38(영화동)	김종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2-12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지분 1/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전산로 222, 비동 1402호(보정동,죽전신세계세븐)	김종선			지분 1/2
9	“	“	129	답	1,152	554	군산시 나운동 155-1 우신 동영아파트 101동 608호	장영록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37	옥구농업협동조합	
10	“	“	129-1	답	2,466	528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66-1 한양운남 비동 102호	전기현			지분 31/100
							군산시 나운동92 금호타운아파트 201동 1204호	이두철			지분 25/10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23-2 신일강변아파트 105동 606호	김점자			지분 25/10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37 남양황제아파트 1동 403호	임유정			지분 19/100
11	“	“	132-1	답	1,912	347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2길 6	정만임			지분 1/2
							군산시 중양로 76-13(중양로3가)	정만숙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573(유천동)	서대전농업협동조합	지분 1/2
12	“	“	136-1	답	2,025	480	익산시 영등동 771-3 우미아파트 101동 901호	권기복			지분 1/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37 남양황제아파트1동 403호	임유정			지분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343, 210동 302호(지족동,반석마을2단지)	강성진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황토현농업협동조합	지분 2/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73-2 서곡현대아파트 105동 601호	서은수			지분 2/8
13	“	“	136-7	답	2,025	603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7, 101동 1102호(산천동, 리버힐삼성아파트)	박희주	군산시 하포로 29(수송동)	군산원예협동조합	지분 1/8
							익산시 영등동 771-3 우미아파트 101동 901호	권기복			지분 1/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37 남양황제아파트1동 403호	임유정			지분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343, 210동 302호(지족동,반석마을2단지)	강성진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황토현농업협동조합	지분 2/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73-2 서곡현대아파트 105동 601호	서은수			지분 2/8
14	“	“	128-2	답	992	120	군산시 나운동 100-11 롯데3차아파트 202동 103호	손균홍			
15	“	“	129-2	답	842	702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66-1 한양운남 비동 102호	전기현			지분 31/100
							군산시 나운동92 금호타운아파트 201동 1204호	이두철			지분 25/10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23-2 신일강변아파트 105동 606호	김점자			지분 25/10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37 남양황제아파트 1동 403호	임유정			지분 19/100
소계(15필지)						4,763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정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	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6	군산	지곡	126-1	답	1,413	1,413	군산시 옥산면 남내로 105	김미란			
17	“	“	64-1	답	4,122	1,435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9 (효자동3가)	최용기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분 1157/4122
							군산시 월명동 26-10	고태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23-2 신일강변아파트 105동 606호	박춘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분 904/4122
							군산시 나운동 155-5 대우아파트 102동 702호	이두철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분 904/4122
							군산시 지곡동 158-1 은파코아루아파트 102동 801호	김경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분 1157/4122
18	“	“	136-6	답	2,145	1,030	군산시 미룡동 900-1 미룡(3)주공아파트 315동 202호	이승진			지분 2576/17160
							군산시 미룡동 896-1 미룡(2)주공아파트 204동 201호	한순재	군산시 수송동 24-13	군산원예농업협동조합	지분 2576/17160
							군산시 개정동 585-20	문성희			지분 2576/17160
							익산시 모현동1가 762-13	신순자			지분 4296/17160
							군산시 나운동 100-11 롯데3차아파트 201동 902호	최경락			지분 5136/17160
19	“	“	137-16	답	2,221	757	군산시 부곡1길 5(나운동)	고종규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황토현농업협동조합	지분 992/7131
							군산시 옥구읍 척동길 100	김영국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황토현농업협동조합	지분 850/7131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513-4	장정선			지분 661/7131
							군산시 나운동 1255-8 현대아파트 105동 1102호	양경희			지분 661/7131
							군산시 나운동 155-10 동신아파트 106동 1501호	박미자			지분 661/7131
							군산시 미룡동 896-1 미룡(2)주공아파트 207동 1304호	이상연			지분 661/7131
							군산시 나운동 345 롯데아파트 102동 603호	김종기			지분 661/7131
							서울 은평구 불광동 248 미성아파트 11동 110호	유호석			지분 661/7131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57 현대아파트 104동 201호	유종성			지분 661/7131
							군산시 미룡동 900-1 미룡(3)주공아파트 315동 202호	이승진			지분 331/7131
							군산시 개정동 585-20	고치영			지분 331/7131
20	“	“	138-6	답	456	456	군산시 동지곡길 53 109동 701호(지곡동,은파코아루아파트)	김기현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21	“	“	139-6	답	793	793	군산시 수송동로91, 103동 1204호(수송동, 수송아이파크)	강희선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주식회사 전복은행	
22	“	“	140-11	답	345	345		군산시			
소계(7필지)						6,229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정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	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3	군산	지곡	137-17	답	654	654	군산시 부곡1길 5(나운동)	고종규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황토현농업협동조합	지분 992/7131
							군산시 옥구읍 척동길 100	김영국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황토현농업협동조합	지분 850/7131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513-4	장정선			지분 661/7131
							군산시 나운동 1255-8 현대아파트 105동 1102호	양경희			지분 661/7131
							군산시 나운동 155-10 동신아파트 106동 1501호	박미자			지분 661/7131
							군산시 미룡동 896-1 미룡(2)주공아파트 207동 1304호	이상언			지분 661/7131
							군산시 나운동 345 롯데아파트 102동 603호	김종기			지분 661/7131
							서울 은평구 불광동 248 미성아파트 11동 110호	유호석			지분 661/7131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57 현대아파트 104동 201호	유종성			지분 661/7131
							군산시 미룡동 900-1 미룡(3)주공아파트 315동 202호	이승진			지분 331/7131
군산시 개정동 585-20	고치영			지분 331/7131							
24	“	“	479-7	도	13	13	농식품부	국			
25	“	“	140-12	도	3	3	군산시 지곡동 79	강종렬			
26	“	“	479-3	도	1,893	30	농식품부	국			
27	“	“	63-7	도	155	5	군산시 지곡동 901	채상묵			
28	“	“	140-13	도	63	63		군산시			
29	“	“	63-7	도	155	6	군산시 지곡동 901	채상묵			
30	“	“	산91-2	임	793	303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0 성원아파트 101동 1304호	최규송			
31	“	“	산92	임	3,074	1,844	군산시 삼학동 271-8	최규송			
32	“	“	328-9	전	2,195	2,195	군산시 내초동 18	채금주	군산시 공항로 22(산북동)	서군산농업협동조합	
33	“	“	328-6	전	1,373	44	군산시 금암동 284-12	나동문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4	“	“	328	전	1,322	663	익산시 월성동 96-28	유덕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31-4, 108호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	
35	“	“	327-1	전	1,693	161	서울 중구 신당동 366-97 서울시니어스타워 1105호	강순남			
36	“	“	329	전	1,058	885	군산시 내초동 18	채금주	군산시 공항로 22(산북동)	서군산농업협동조합	
37	“	“	329-1	전	3,203	759	군산시 지곡동 329-1	고병구	군산시 하포로 29(수송동)	군산원예농업협동조합	
38	“	“	335	전	1,818	218	군산시 축동로42, 302동1001호 (수송동, 군산수송제일오투그란테1단지)	차판순	군산시 조촌동 774	군산농업협동조합	
39	“	“	127	전	1,190	363	군산시 남수송3길 22(수송동)	오미진	서울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농업은행주식회사	
소계(17필지)						8,209					
총 계(39필지)						19,212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군산	지곡	329	창고	목조	5.3	5.3	군산시 내초동 18	채금주			
				창고	목조	7.0	7.0					
2	“	“	328-9	창고	목조	5.4	5.4	군산시 내초동 18	채금주			
				창고	목조	4.3	4.3					
3	“	“	329-1	창고	블럭스레트	200.9	200.9	군산시 지곡동 329-1	고병구			
				기름탱크	철제	1식	1식					
				컨테이너	철제	19.8	19.8					
				감나무		1주	1주					
				양계장		718.8	718.8					
4	“	“	산92	분묘		6기	6기	군산시 삼학동 271-8	최규송			
5	“	“	64-4	창고	목조	5.0	5.0		미상			